

# 함양군 - (주)플래닛주민센터 - 함양군4H연합회 업 무 협 약 서

함양군 · (주)플래닛주민센터 · 함양군4H연합회(이하 “세 기관” 이라 한다)는 함양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.

제1조(목적) 세 기관은 함양이 가진 유·무형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생활인구 확대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한다.

제2조(협력사항) 세 기관은 다음 사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함양군	(주)플래닛주민센터	함양군4H연합회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▶ 민관협력 상생모델 개발</li><li>▶ 시설 조성 및 제공</li><li>▶ 행정적·재정적 지원</li><li>▶ 홍보 · 마케팅 지원</li>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▶ 민관협력 상생모델 개발</li><li>▶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</li><li>▶ 소셜트립 참여자 모집</li><li>▶ SNS 기반 홍보·마케팅</li>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▶ 민관협력 상생모델 개발</li><li>▶ 시설 운영관리</li><li>▶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</li><li>▶ 지역공동체 연계 홍보</li></ul>

제3조(협약기간) 협약기간은 5년(2024년 ~ 2029년)으로 한다. 다만, 세 기관의 협의 하에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4조(협약의 변경 및 해지) 세 기관이 협의 하에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협약 내용의 해석에 상호 이견이 있거나 협약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간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5조(비밀 유지) 세 기관은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호 협력한 사항과 공유한 자료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, 세 기관의 동의에 의해서만 공개할 수 있다.

제6조(효력 발생)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제7조(협약서 작성 및 보관)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당사자 간에 협약서를 작성·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4년 4월 19일



함양군

군수 진병영



(주)플래닛주민센터

대표 박찬우



함양군4H연합회

회장 유강현